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92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이언주 · 김병주 · 김한규
이개호 · 정진욱 · 조계원
이광희 · 소병훈 · 이상식
홍기원 · 안태준 · 황명선
민병덕 · 허성무 의원
(14인)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통학버스의 체계적인 운영, 소규모 학교 통합 등에 따른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등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권을 보장하여 학생

의 교육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 라. 특수교육대상자, 재난 발생지역 학생, 농어촌 지역의 학생, 원거리 학생 등을 통학비용 지원 대상으로 하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바.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운영 및 통학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통학버스”란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운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통학지원”이란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통학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통합운영”이란 학생통학버스 관련 관리 권한을 관할 교육감이 일괄하여 학생통학버스의 노선 편성,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 등

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 통학지원의 예산 지원,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통합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 등을 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생통학지원 통합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하 “통합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통합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학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통학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
3. 학생통학버스 관련 안전 대책
4.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 그 밖에 통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생의 통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학지원의 기준 및 방법
3.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중단 결정
4. 그 밖에 통학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통학비용 지원 대상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하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라 한다)을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생

4. 학교 통폐합과 신설·대체이전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5.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배치하는 학교에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
6. 원거리 또는 안전 미확보 등의 이유로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7. 지형적 여건이나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통학이 곤란한 학생
8. 지리적·경제적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② 교육감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비용의 지원 및 지원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통학지원 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관할 구역 내 학생의 통학 거리, 대중교통의 여건 등에 관한 학생 통학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통학버스 운영,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학비용의 지원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학비용 지원 대상자에게 대중교통 이용권을 지급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권의 지급, 교통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보통교부금 산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산정 시 각 교육청의 통학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및 전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통학지원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학생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해당 경비의 일부를 전출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 교육감은 학생통학버스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공이나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 등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첨단 안전장치 탑재 및 보호장구 설치 등 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3. 학생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 요건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의 안전한 통학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